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민주화운동 정의규정에 3·17서울민주의거 및
12·3빛의혁명 포함 〉

- 이광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527호)
- 김병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799호)

2026.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이광희의원안

가. 제 안 자 : 이광희의원 등 20인

나. 제 안 일 : 2025. 11. 25.

다. 회 부 일 : 2025. 11. 26.

2. 김병기의원안

가. 제 안 자 : 김병기의원 등 166인

나. 제 안 일 : 2025. 12. 3.

다. 회 부 일 : 2025. 12.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이광희의원안

헌행법은 2·28대구민주화운동, 3·8대전민주의거에 이어 1960년 3·15부정선거에 항의하여 일어난 마산지역의 3·15의거를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하고 신장시킨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3·15부정선거에 항의하여 서울 소재의 성남고등학교 학생

400여명이 시위를 벌인 “3·17서울민주의거” 역시 2·28대구민주화운동, 3·8대전민주의거와 함께 4·19혁명의 기폭제가 되었음에도 현행법의 민주화운동에 누락되어 역사적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민주화운동 정의 규정에 3·17서울민주의거를 포함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시킨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함(안 제2조).

2. 김병기의원안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민과 국회가 헌정질서를 평화적으로 수호한 2024년 12·3빛의혁명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비폭력 원칙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전환점을 마련한 역사적 사건이며, 국민의 기본권과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시민이 주도한 민주화운동이라 할 수 있음.

이에 12·3빛의혁명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주요 기념·교육·연구 대상에 포함하고, 기념사업·자료수집·전시·교육프로그램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제대로 기록·계승하고자 함(안 제2조).

Ⅲ. 검토의견

개정안들은 민주화운동 정의 규정에 3·17서울민주의거와 12·3빛의 혁명을 포함하려는 것임.

[illegible]

현행법은 민주화운동을 “2·28대구민주화운동, 3·8대전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6·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음.¹⁾

민주화운동의 정의와 관련하여 2001년 법 제정시에는 3·15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6·10항쟁 등이 사례로 제시되었으나, 이후 2010년 2·28대구 민주화운동이, 2013년 3·8대전민주의거가, 2023년 인천5·3민주항쟁이 각각 법 개정을 통해 추가되었음.

《 법 제2조 민주화운동의 정의 연혁 》

구분	주요 내용
2001년 제정	3·15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6·10항쟁 등
2010년 일부개정	<u>2·28대구민주화운동</u> , 3·15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6·10항쟁 등
2013년 일부개정	2·28대구민주화운동, <u>3·8대전민주의거</u> , 3·15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6·10항쟁 등
2023년 일부개정	2·28대구민주화운동, 3·8대전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u>인천5·3민주항쟁</u> , 6·10항쟁 등

※ 관련 법조문 등을 참고하여 작성

이광희의원안은 1960년 3월 17일 서울 성남고등학교 학생들이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인 3·17서울민주의거를, 김병기의원안은

1) 현행법 시행령 제2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에 대하여 ① “2·28대구민주화운동, 3·8대전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 6·3한일회담 반대운동, 3선개헌 반대운동, 유신헌법 반대운동, 부·마항쟁, 광주민주화운동 및 6·10항쟁”, ②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주화운동(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심의·결정한 사례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① 및 ② 외의 활동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고시하는 민주화운동”으로 정의하고 있음.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대한민국헌법」 제77조제5항²⁾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로 막아낸 12·3빛의혁명을 각각 법 제2조의 민주화운동의 범위에 추가하려는 것임.

이중 3·17서울민주의거의 경우 2017년 박주민의원 대표발의로 이를 민주화운동의 정의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동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 되었으나 제20대 국회 임기만으로 폐기된 바 있고,

2021년 2월 3·17민주의거기념사업회가 이를 민주화운동으로 고시해줄 것을 요청한 것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3·17서울민주의거는 3·15의거 및 4·19혁명과 연속선상에 있어 이미 민주화운동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으며, 이후 2021년 7월 20일 「서울특별시 3·17 민주의거 기념 조례」가 제정되어 2022년부터 매년 3월 17일에 3·17 민주의거 기념식이 서울시 주관으로 거행되고 있음.³⁾

2) 「대한민국헌법」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3) 「서울특별시 3·17 민주의거 기념 조례」는 3·17민주의거가 자유당의 3·15부정선거에 항거하여 일어난 사건으로, 4·19혁명의 단초가 된 학생의거임을 명시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3·17민주의거 기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3·17민주의거”란 자유당의 3·15부정선거에 항거하여 1960년 3월 17일 서울지역에서 일어난 4·19혁명의 단초가 된 학생의거를 말한다.

《 3·17서울민주의거 민주화운동 포함 관련 추진경과 》

- ▷ '17.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개정안 발의(박주민의원, 임기만료 폐기)
- ▷ '21.2. 민주화운동 고시 요청(3·17민주의거기념사업회)
 - '21.4. "3·17서울민주의거는 3·15의거 및 4·19혁명과 연속선상에 있어 이미 민주화운동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 가능"(행안부 공식 회신)
- ▷ '21.7. 「서울특별시3·17민주의거 기념 조례」 제정·시행

※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가공

개정안들에 따라 3·17서울민주의거와 12·3빛의혁명이 법 제2조에 따른 민주화운동의 정의에 추가되는 경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목적사업 대상인 민주화운동으로서 동 사건들의 법적 지위가 확고히 인정될 수 있고, 이와 관련된 조사·연구 및 기념사업의 추진이 활성화되는 등의 입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이 법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면서, 동 사업회의 목적사업 대상이 되는 민주화운동을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입법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3·17서울민주의거 및 12·3빛의혁명이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다른 민주화운동에 상응하여 그 의의를 기념하고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국가적 사업의 대상으로 명시할 수 있을 정도의 역사적 의의를 갖는다는

평가가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임.

또한 김병기의원안이 “12·3빛의혁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반면, 박선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790)⁴⁾은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이해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23)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27)⁵⁾은 이를 “민주시민의 날”로 지정하려는 등 동 사건을 지칭하는 용어가 통일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통합하는 등의 논의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3·15부정선거에 항거하여 전국적으로 전개된 학생·시민 시위 중 하나인 3·17서울민주의거와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민과 국회가 헌정질서를 평화적으로 수호한 사건인 12·3빛의혁명을 민주화운동 정의에 포함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공감하나, 이를 3·15의거 및 4·19혁명 등과 구분되는 별도의 국가적 사업의 대상으로 명시할 만한 역사적 의의를 갖는다는 평가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4) 국민의 주권이 헌정질서를 지킨 날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을 되새기기 위하여 매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려는 것임.

5) 사상 초유의 대통령 친위쿠데타에 맞서 시민이 직접 민주주의를 수호한 역사적 사건의 발생일인 12월 3일을 ‘민주시민의 날’로 지정하고, 이를 국경일과 공휴일로 삼아 민주시민의 승리를 기념하고, 민주주의의 가치와 의미를 계승·발전시키고자 하려는 것임.

문 의 처
02)6788-5343